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0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송경택,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기능하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개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에,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 음)</p> <p><u>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 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u></p>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등)제3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견수렴(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확인결과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